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스토킹 피해의 가해자 위험요인:  
친밀관계 종결 후 피해자의 보고를  
통하여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 소 민

스토킹 피해의 가해자 위험요인:  
친밀관계 종결 후 피해자의 보고를  
통하여

Exploring Risk Factors for Stalking Perpetrator: Through  
Report of Victims After the End of an Intimate  
Relationship

2024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 소 민

스토킹 피해의 가해자 위험요인:  
친밀관계 종결 후 피해자의 보고를  
통하여

지도교수      정 승 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 소 민

# 박소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오지현 (인)

위 원      김택호 (인)

위 원      정승아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가설 .....	6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스토킹의 정의 .....	7
1. 스토킹의 정의 및 유형 .....	7
2.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개념 .....	12
제2절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 .....	13
1. 친밀한 파트너 폭력 .....	13
2. 파트너의 통제 .....	14
3. 파트너의 성격특성 .....	17
제3장 연구 방법 .....	20
제1절 연구 대상 .....	20
제2절 측정 도구 .....	22
1. 스토킹 피해 척도 .....	22
2.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피해 척도 .....	22
3. 통제행동 척도 .....	23
4. 집착행동 척도 .....	23

5. DSM-5 성격질문지 정보제공자 보고형 .....	24
제3절 자료 분석방법 .....	26
제4장 연구 결과 .....	27
제1절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실태 .....	27
제2절 주요변수 기술통계 .....	30
제3절 스토킹 피해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 차이 ...	31
제4절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 .....	33
1. 주요변수 간 상관 .....	33
2.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 .....	35
제5장 논의 및 제언 .....	38
참고 문헌 .....	46
부록 .....	55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1
<표 2>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25
<표 3> 연구대상자의 스톡킹 피해실태 .....	28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	30
<표 5> 스톡킹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 차이 .....	32
<표 6> 주요변수 간 상관계수 .....	34
<표 7> 스톡킹 피해의 위험요인 .....	37



# ABSTRACT

## Exploring Risk Factors for Stalking Perpetrator: Through Report of Victims After the End of an Intimate Relationship

SO MIN PARK

Advisor : Prof. Seung Ah Jung,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for stalking victimization.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from 363 adult men and women aged 20–50 who had dating experience, and Mann–Whitney U tset,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7.0.

The followings are summary of the result: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IPV)’ and ‘controlling behavior’ between those who had experienced stalking and those who had not. In other words, victims of stalking experienced more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and their partner’s controlling and obsessive behavior.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partners’ between those who had experienced stalking victimization and those who had not. In other words, the partner of a stalking victim showed more antisocial personality traits (callousness, manipulateness, deceitfulness, irresponsibility, hostility, impulsivity, risk-taking),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emotional lability, hostility, impulsivity, risk-taking),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attention seeking) than their non-stalking partners. Seco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the partner's obsessive behavior and impulsivity, callousness traits were a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stalking victimiza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 stalking, intimate partner stalk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sonality disorder*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토킹이란 타인의 “원치 않는 행동으로 인해 개인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행동 패턴으로서, 괴롭힘, 위협,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Miller, 2012; Logan & Walker, 2009). 이처럼 스토킹이라고 하는 행위에는 특별히 난폭성이나 폭력성을 지니지 않는 행위 형태들도 포함돼 있어(이건호, 2004), 피해자에게 직접적 상해를 초래하는 위협적 행동 이기보다는 일방적이고 끈질긴 구애 행동 정도로 간주 되어 왔다. 이에 권혜림(2022)은 우리 사회가 스토킹 행위를 낭만적 관계나 적극적인 구애로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끈질긴 스토킹 끝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홍신소를 고용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20대 역무원을 3년간 스토킹하다 피해자의 근무지 화장실에서 살해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이는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살인에 이르는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경찰청에서 보고한 스토킹 범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2022년 1월~8월까지 4,77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이재민, 2022). 또한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전 대비 약 3.6배 증가한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박상진, 2022).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하여 2021년 10월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었고 서울 경찰청에서는 국내 최초 스토킹 행위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문적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대책을 실현하기도 했다.

스토킹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행동이다(Miller, 2012). 사전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은 가장 높은 확률로 전 애인을 스토킹 했으며(Thomas, Purcell, Pathe, & Mullen, 2008

;Spitzberg et al., 2010)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연인인 경우가 58.5% 가정폭력, 데이트폭력과 연관성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다(김길환, 2022).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평생 스토킹의 가해자 유형" 조사 결과(2021)에 따르면 '당시 배우자', '피해 이전 헤어진 배우자', '피해 당시 사귀고 있던 사람',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 헤어졌던 사람'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가해자의 비율은 총 40.3%에 해당했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34.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가해자 유형 중에서도 특히 '과거에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서는 헤어졌던 사람'이 2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가 종결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가 빈번하게 뒤따름을 시사한다.

스토킹 가해자의 유형을 동기와 관계에 따라 분류한 Mullen 등(1999)은 전 파트너를 스토킹하는 거부형 스토커(rejected stalker)의 경우, 전 파트너가 관계를 거부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스토킹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화해와 보복의 감정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가장 끈질기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Mullen, Purcell, & Stuart, 1999). 이들은 스토킹 유형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일 뿐만 아니라 낮은 타인을 스토킹하는 유형보다 공격적이고, 심각한 침해행위를 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된 제 3자를 대상으로도 협박과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Sheridan & Davis, 2001)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

한편, 이수정(2021)은 스토킹 가해자와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고, 그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이하 IPV)이란 현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신체적, 성적 공격 행위”(Straus, Hamby, Bonet-McCoy, & Sugarman, 199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를 말한다. IPV와 스토킹에 관한 사전 연구에 따르면 모든 IPV 피해 유형과 사후관계 스토킹(Post Relationship Stalking, 이하 PRS)피해 간 관계가 유의하였으며(Senkans, McEwan, & Ogloff, 2021), 파트너에 대한 폭력 수준이 심각할수록 더욱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Norris, Huss, & Palarea, 2011; Nicastro, Cousins, & Spitzberg, 2000; Ferreira & Matos, 2013).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IPV 피해 여성에 비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IPV 피해 여성이 관계가 지속됐을 당시 더욱 심각한 심리·신체·성적 학대와 상해 피해 경험했다고 보고했다(Logan, Shannon, & Cole, 2007). 특히 신체·성적 폭력과

같은 심각한 폭력피해 유형은 스토킹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Senkans, McEwan, & Ogloff, 2021; Burgess, Harner, Baker, Hartman & Lole, 2001) McEwan 등(2017)은 신체적 폭력이 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의 독특한 위험요인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향후 스토킹의 위험 요소가 된다(Coleman, 1997; Douglas & Dutton, 2001; Kienlen et al., 1997; Mechanic, Weaver, & Resick, 2000). 2000; Tjaden & Thoennes, 2000).

이수정(2023)은 스토킹 범죄와 같이 특정 행동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범죄자에게 심리적으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있으며, 그 자체가 범죄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스토킹 행위는 주로 한 명의 표적을 대상으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독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몰두하고 집착하는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스토킹 행위자가 어떤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Wheatley, Wheatle, & Kuss, 2020), 스토킹의 인지,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정신장애 유형은 성격장애이며 그 중에서도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B군 성격장애 특성이 빈번하다고 밝혀져 있다(Meloy, 1998; Meloy & Gothard, 1995; Mullen et al., 1999; Mullen, Pathe, & Purcell, 2001; Rosenfeld & Harmon, 2002).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스토킹 재범의 예측요인을 식별한 Rosenfeld(2003)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이 낭만적인 관계를 회복하거나 유지하려는 욕구에 의해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으며(n=61, 56%),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지닌 가해자가 가장 많았고(n=22, 20%), 정신분열증, 편집증,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 순으로 빈번했다. 일전에 관계를 맺은 적 없는 낯선 타인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는 정신병적 망상이 특징인 반면, 이전 연인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끝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복이나 통제의 동기를 지니는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대개 관심과 권력에 대한 욕구, 착취적 본성, 질투 경향, 공감 부족 및 권리 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장애를 지니며 사회적 거부에 대해 극단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Twenge & Campbell, 2003;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이에 Mullen 등 (2006)은 특히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징으로 자기애성

성격을 강조한 바 있는데, 그는 전 연인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부형 스토커(rejected stalker)의 경우 높은 비율로 반사회성, 자기애성 특성을 지니며 편 집증적 경향이 있어 질투심과 의심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Mullen et al., 2006). Meloy(1997; 1999) 역시 다른 스토킹 유형보다 이전 파트너를 스토킹하는 유형이 빈번한 이유는 스토커들이 주로 자기애성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며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거부되거나 버림받을 때 자기도취적 스토커의 질투심, 과대망상, 특권의식과 같은 특성이 발현되고 이전 파트너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거나 복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토킹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할 때마다 자기애적 상처가 발생하는데 수치심, 굴욕, 상실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분노, 권리에 대한 환상, 보복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있다(Kienlen et al., 1997; Kamphuis & Emmelkamp, 2000; Douglas & Dutton, 2001). 경계선 성격을 지닌 스토커의 경우 피해자와 심리적 분리를 어려워하는 성향으로 인해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분노와 집착,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다. 이전 배우자를 스토킹한 가해자는 정서적 불안정성, 애착 기능 장애, 원시적 방어, 약한 자아 강도, 질투, 분노, 물질 남용 및 유아기 트라우마가 특징적이었으며 두 집단 모두 인지된 또는 실제 거부 또는 포기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Douglas & Dutton, 2001).

또 다른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은 파트너의 통제 행동이다. Melton(2007)은 행동 통제 경험이 스토킹 피해에 대해 가장 큰 예측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가 심각한 통제 행동을 경험할수록 심각한 스토킹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Brewster(2003)는 과거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이 금전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통제 피해 역시 경험한 과거력이 있음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금전적, 성적 통제보다 사회적, 신체적 통제력을 보고한 피해자의 수가 더 많았으며 거의 모든 피해자가 이전 파트너로부터 스토킹 중 심리적 통제를 경험했고 3분의 2 이상이 ‘친구나 가족과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통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스토킹이 관계 내에서 시작된 권력 및 통제학대(abuse of power and control)의 연장선임을 의미한다(Brewster, 2003). 즉, 친밀한 관계가 끝나기 전과 스토킹 기간 내내 권력과 통제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스토커는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다시 확립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Melton, 2007).

스토커들의 애착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개 몰두 애착을 보였는데 (Kienlen, 1998; Meloy, 2007; MacKenzie et al., 2008), Kienlen(1998)은 성인 스토커의 60% 이상이 주 양육자를 잃거나 그와 분리된 경험을 했다고 언급했으며 스토커 사이에서 이러한 불안정 애착 요인이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많은 스토커들은 스토킹 행위 직전에 피해자와 분리되는 것과 관련된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며 분리에 대한 반응으로써 '근접성 추구(proximity seeking)' 행동을 하게 된다(Hazan & Shaver, 1987; Kienlen, 1997; Borochowitz & Eisikovits, 2002). 근접성 추구는 애착 대상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파트너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매달리고 통제할 수 있으며(Mikulincer & Shaver, 2007) 스토킹 행위와 유사하게 이전 파트너를 쫓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집착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스토킹 피해는 전 연인이나 전 배우자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관계가 유지된 당시의 성적·신체적 폭력피해, 파트너의 통제 행동과 집착 행동이 관계 종결 후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스토킹의 인지,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신장애 유형이 B군 성격장애 특성이라는 사전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Meloy, 1998; Meloy & Gothard, 1995; Mullen et al., 1999; Mullen, Pathé, & Purcell, 2001; Rosenfeld, 2003; Rosenfeld & Harmon, 2002), 반사회성·자기애성·경계성 성격장애를 지닌 파트너의 경우 관계 단절에 대한 복수, 파트너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는 수단 혹은 파트너에 대한 강한 소유욕과 집착에 의해 스토킹 행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성인 남녀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실태를 확인하고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을 IPV 피해 요인(성적·신체적 폭력피해), 통제 요인(파트너의 통제 행동과 집착 행동), 파트너의 성격특성 요인(반사회성·자기애성·경계성 성격특성)으로 구분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가설

연구 문제1.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의 독특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가?

연구가설 1-1. 스토킹 피해 경험에 따라 IPV 요인, 통제 요인, 파트너의 성격 특성 요인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IPV 요인, 통제 요인, 파트너의 성격특성 요인 중 스토킹 피해 집단을 예측해주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스토킹(stalking)의 정의

#### 1. 스토킹의 정의 및 유형

##### 가.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stalking)은 “떡잇감의 뒤를 몰래 밟다” 혹은 “누군가를 강박적으로 뒤쫓다”를 의미하는 스토크(stalk)의 명사형에서 파생된 용어로 스토키(stalker)는 범행대상을 따라다니는 사람(prowler)의 의미를 담고 있다.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는 “괴롭힘(female harassment)”, “강박적 추적(obsessive following)” “심리적 강간(psychological rape)” 혹은 “색정광(erotomania)” 등으로 불리면서(Meloy, 1996; Zona, Sharma, & Lane, 1993; McCann, 1998), 주로 현재 교제 중인 여성 파트너나 이전 여성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남성의 지속적 집착, 착취행위를 의미했다.

이후 1980년대 미국에서 존 레논(John Lennon), 레베카 쉐퍼(Rebecca Lucile Schaeffer) 같은 유명 연예인이 스토키에 의해 살해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주목되자 언론에서는 “유명인에게 집착하는 낯선 사람”을 지칭하고자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90년대 이후 스토킹이 관계성 범죄로 법제화되면서 법률적 의미를 갖추게 되었다. 최초로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을 제정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스토킹을 “의도적, 악의적, 반복적으로 타인을 쫓아다니거나 괴롭히고, 타인 혹은 그의 직계가족에게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적 상해를 가할 것이라 위협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McAnaney, Curliss, & Abeyta-Price, 1999). 한편, 국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

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스토킹의 학술적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반복적 행동으로 인해 개인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행동 패턴으로서, 타인에게 괴롭힘, 위협,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Miller, 2012; Logan & Walker, 2009)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스토킹 실태를 검토한 박철현 등(2000)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계속 쫓아다니거나 관심을 표명하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선물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가심이나 불쾌감, 또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스토킹을 정의했다(박철현, 이상용, & 진수명, 2000). 이시형 등(1998)은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상대도 나를 좋아할 것이다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이성 또는 동성에게 접근하여 싫은 행위를 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등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스토킹으로 정의한 바 있다(이상철 & 김평수, 2002에서 재인용). 조희진(1999)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거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거나 놀라게 하는 행위”라 하였으며, 조국(2000)은 “각종의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안겨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처럼 스토킹의 정의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협감을 가하는 행위부터 신체적 위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행동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 나. 스토킹 유형

선행연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 및 가·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한다(Geberth, 1992; Meloy, 1998; Mullen, Pathe, Purcell, & Stuart, 1999; Sheridan, Blaauw & Davies, 2003; Zona, Sharma, & Lane, 1993). 구체적으로, Geberth (1992)은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따라 정신병질적 성격장애 스토킹(psychopathic personality disorder)와 정신증적 성격장애 스토킹(psychotic personality disorder)로 구분했다. 이때, 정신병질적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지배적인 전과

트너에 해당하는 반면, 정신증적 스토커는 영화배우와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대상에 집착하는 색정광(erotomania)을 지닌 개인에 해당한다. Zona 등(1993)은 가·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 스토커 유형을 단순집착형(simple obsessional stalker), 애정망상형(erotomania), 애정집착형(love obsessional stalker)으로 구분했다. 단순집착형은 스토킹 행위 이전에 피해자와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이거나, 연애 관계, 성적 관계가 있었던 스토커 유형으로 대개 성격장애 및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전 연인을 끈질기게 쫓아다니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고 전체 스토커 유형의 50%를 차지했다. 애정망상형 스토커와 연애집착형 스토커는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타인이 자신과 사랑에 빠져있다는 망상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애집착형은 유명인을 스토킹하는 스토커로 직장동료,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스토킹하기도 하며 애정망상형의 경우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유명인이 피해자가 되며 여성에게 빈번하고 전체 스토커의 10%에 해당한다(Zona et al., 1993).

Meloy(1998)은 단순집착형 스토커(simple obsessional), 애정집착형 스토커(love obsessional stalker), 성욕증 스토커(erotomaniac satlker), 거짓피해자화 증후군(false victimization syndrome)으로 스토킹 유형을 구분했다. 단순집착형 스토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에 대해 사전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로 대부분 전남편이나 아내 혹은 전 데이트 파트너 관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은 피해자와 관계가 끝나고 나서 전 파트너가 괴롭힘, 위협 및 정신적 테러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것으로 관계 재개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한 복수동기로 스토킹을 하게 된다. 애정집착형 스토커는 라디오, TV, 영화배우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이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 장애를 지니며 사회적 부적응, 친밀관계 형성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 피해자와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긍정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좌절감이나 분노를 경험하여,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맞서려는 의도를 나타낼 수 있고 장기적인 치료적 접근이 요구되는 유형이다. 성욕증 스토커 유형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망상적 믿음이 있으며 가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노인인 경우가 많다. 거짓된 피해자화증후군은 다른 스토커 유형과 달리 피해자가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짓주장을 하는 유형으로 관심 요구, 미성숙하고 급격한 감정표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연극성 성격장애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대부분이 여성에 해당하며 실패했다고 지각한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Mullen 등(1999)은 거부당한 스토커(rejected stalker) 친밀감 추구형 스토커(intimacy seeker), 무능형 스토커(incompetent suitor), 분개형 스토커(resentful stalker), 약탈형 스토커(predatory stalker)의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거부당한 스토커는 앞선 Zona 등(1993)의 단순집착형 스토커와 유사하게 애인, 친구, 직장 동료 등 과거의 파트너와의 관계가 끝난 이후 화해와 보복의 감정을 갖고 스토킹을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단절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피해자가 이러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친밀감 추구형은 색정망상형 스토커와 연애집착형 스토커와 유사하다. 즉, 사전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대상에게 집착하여 관계 맺기를 원하고, 자신이 상대방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망상을 가지는 유형이다.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나 직업이나 신분 등의 외부적 이유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유명인을 표적으로 삼는다. 무능형은 친밀 추구형과 비슷하게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주로 성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능이 낮고, 사회적으로 무능한 남성에게 빈번하며 관계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어 스토킹을 하는 유형이다. 분개형 스토커는 거부에 대한 상처를 보상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피해자의 친구를 괴롭히거나 집, 자동차 같은 소유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며 피해자의 일상을 가장 저해하고,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약탈형은 가장 드문 유형으로 피해자를 은밀히 감시하고 추격하여 물리적 폭력,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로 실제 공격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피해자가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Boon과 Sheridan(2001)은 가·피해자와 관계 및 가해 동기에 따라 스토킹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유형으로는 전 파트너 스토킹(Ex-partner harassment/stalking), 짝사랑 스토킹(Infatuation harassment), 망상성 집착 스토킹(delusional fixation on stalking), 가학적 스토킹(sadistic stalking)이 해당된다. 전 파트너 스토킹은 과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와 관련되며 가해자는 이전에 관계를 맺었던 피해자에 대한 증오, 분노 및 적개심을 지닌다. 공개적인 폭력행위, 언어폭력, 가정폭력과 관련이 높고 쉽게 분노에 휩싸이며 충동적인 경향이 있다. 피해 시점은 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시기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짝사랑 스토킹은 피해자를 애정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주변을 서성이거나, 주변 지인들에

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협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유형이다. 대개 환상적인 사랑의 감정을 가지며 세계와 사건을 이러한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한다. 피해자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며 이러한 열망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며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10대 또는 중년에 해당한다. 망상성 집착 스토킹은 낯선 사람이나 지인, 유명인을 대상으로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환상을 지니는 가해자이다. 스토커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사랑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개 조현병 삽화나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병리 문제를 지닌다. 주로 성적으로 외설적이며, 의미상 일관성이 없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끊임 없이 보내며 성적인 동기를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높다. 가학적인 스토커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공포스럽게 함으로써 쾌감을 얻는 유형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스토킹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유형이다.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는 사디즘적 욕구와 정서적 냉담성, 정신병적 특징을 보이며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대상을 가족이나 친구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두려움이나 사생활 침해 및 사회생활 축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이혜지, 이수정(2023)이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척도, PAI 경계선적 특징 척도(PAI-BOR),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척도(SRPS), 기만/조종척도를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자들의 심리 유형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들은 피해자와 관계가 전 연인, 전 배우자 등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n=39) 심리적 유형은 성차별(통념) 유형, 반사회성(충동성) 유형, 조종(경계성) 유형으로 구분한다. 성차별(통념) 유형은 여성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를 통해 자기합리화를 시도할 수 있으나 결합적 성격특성은 발견되지 않는 유형이다. 반사회성(충동성) 유형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 또는 보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 스토킹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으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노 표출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조종(경계성)유형은 자기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기만하거나 조종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현실검증력이 낮은 상태에서 불법행위가 스스럼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스토

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 신념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 2.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Intimate Partner Stalking)의 개념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은 앞서 논의한 스토킹 유형 중 Zona (1993)의 단순집착형 스토키, Meloy(1998)의 단순집착형 스토키, Mullen(1999)의 거부당한 스토킹 유형, Sheridan 등(2003)의 전파트너 스토킹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과거 혹은 당시 연인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관계 회복 혹은 관계 종결에 대한 복수심, 질투에 의해 스토킹을 하게 된다.

기존의 친밀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와 관계를 종결한 파트너를 모두 포함하는데(Fisher, Cullen, & Turner, 2002), McEwan 등(2017)은 친밀한 관계의 모든 단계에서 스토킹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McEwan, Daffern, & MacKenzie, 2017).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현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와 이전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 발생률을 판단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각 행위 간 잠재적 차이나 두 행위를 이어주는 요인을 모호하게 하게 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Senkans, McEwan, & Ogloff, 2021). 이에 Senkans 등(2021)은 사후적 관계 스토킹(Post relationship Stalking: PR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낭만적 관계가 끝난 뒤에 발생하는 표적화된(targeted), 반복적인(repeated), 의사에 반한(unwanted) 침해 행위”가 PRS에 해당하며(Douglas & Dutton, 2001; McEwan et al., 2017; Mullen, Pathé & Purcell, 2009), “현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신체적, 성격적 공격 행위”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IPV)(Straus, Hamby, Bonet-McCoy, & Sugarman, 199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오 등(2015) 역시 “헤어짐 이후의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피해상태를 파악하였으며 김성희와 이수정(2022)은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나타나는 스토킹’, 즉 ‘사후적 관계 스토킹’ (PRS)’에 스토킹의 개념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스토킹이란 “친밀한 파트너 관계가 종료된(전연인, 전 배우자, 기혼 중 별거, 가출) 이후 이들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미행 혹은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을 방문 혹은 배회하며 괴롭히는 한편 재결합이나 재 만남을 목적으로 전화나 전자우편, 메시지 등의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헤어진

파트너나 주변인들에게 성가심, 불쾌감 또는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Senkans 등(2021)과 김성희 등(2022)의 정의를 인용하여 “친밀한 관계가 종결된 상대방(전연인, 전 배우자, 기혼 중 별거)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스토킹을 정의하고자 한다.

## 제2절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

### 1.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 가. 신체적·성적 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신체·성적·심리·정서·언어·경제적 폭력을 포함한다(Lacey, McPherson, Samuel, Powell Sears, & Head, 2013). 1970년대를 기점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IPV 연구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이외에 가정폭력까지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다(Dutton, 1988; Saunders, 1992;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이때,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하며 팔 비틀기, 꼬집기, 움켜잡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뺨 때리기, 발로 차기나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리거나 던지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적폭력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신체적 힘을 사용하거나 겁박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하는 등의 성희롱이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traus et al., 1996). 이러한 폭력의 하위유형은 높은 강도의 폭력과 낮은 강도의 폭력을 구분하는데, 대개 신체적 상해는 높은 강도의 폭력에 해당하며,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를 입히려는 형태의 공격은 낮은 강도의 폭력으로 간주하고 있다(Anderson & Bushman, 2002). IPV와 스토킹의 관계에 관한 사전 연구에 따르면 모든 IPV 피해 유형에서 사후관계 스토킹(PRS; Poset Relationship Stalking)피해 간 관계가 유의하였으나(Senkans, McEwan, & Ogloff, 2021), 파트너에 대한 폭력 수준이 심각할수록 더욱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Norris, Huss, & Palarea, 2011; Nicastro et al,

2000; Ferreira & Matos, 2013). McEwan 등(2017)은 신체적 폭력이 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의 독특한 위험요인이라 주장했는데, 신체·성적 폭력과 같은 심각한 폭력피해 유형은 스토킹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Senkans, McEwan, & Ogloff, 2021; Burgess et al., 2001). 또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IPV 피해 여성에 비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IPV 피해 여성이 관계가 지속됐을 당시 더욱 심각한 신체·성적 학대와 상해 피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Logan, Shannon, & Cole, 2007).

## 2. 파트너의 통제

### 가. 파트너의 통제 행동

통제 행동이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한 개인을 고립시키는 것, 이동을 감시하는 것, 금전적 자원, 취업, 교육이나 의료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 제한의 범위에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한 개인을 고립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동을 감시하는 것, 금전적 자원, 취업, 교육이나 의료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한편, Eastal(1996)은 부부가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작된 폭력이 별거 단계(separation phase)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강박적인 소유욕과 통제력 혹은 권력의 행사”가 별거 이후 폭력의 중요 요소라 밝혔다. 이처럼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관계 종결 이후에도 폭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전 연구에 따라 Brewster (2003)은 스토킹 상황과 이전의 친밀한 상황 모두에 존재하는 권력과 통제 요소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가 지난 5년 동안 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전 관계 및 스토킹 상황에서 금전적, 심리적/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통제 피해가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사회적, 신체적 통제 행동을 보고한 피해자의 수가 더 많았다. 거의 모든 피해자가 이전 파트너로부터 스토킹 중 심리적 통제를 경험했으며 3분의 2 이상이 스토킹 중 사회적 통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Melton(2007)은 스토킹 가해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들과 스토킹 가해 경험이 없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비교한 바 있다. 그 결과, 스토킹을 하지 않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비해, 스토킹을 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관계가 종결된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더 통제적인 행동을 보였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적 폭력과 학대 역시 더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스토킹이 관계 내에서 시작된 권력 및 통제학대의 연장선임을 의미한다(Brewster, 2003). 즉, 친밀한 관계가 끝나기 전과 스토킹 기간 내내 권력과 통제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스토키는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다시 확립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인지한 후 이를 유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Melton, 2007). 따라서 연인관계에서 자신의 의지나 취향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를 관찰하기 위해(김진숙, 문화진, 2021) 연인에게 빈번한 통제 행동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계 종결 이후에도 이전 연인에 대한 소유욕과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느낌, 생각, 혹은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욕구에 의해 자신의 파트너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행동”을 통제 행동으로 정의하고 파트너의 통제 행동이 스토킹 피해에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 나. 파트너의 집착 행동

성인의 낭만적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초기 관계, 즉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에 따라 애착 과정으로 개념화된다(Hazan & Shaver, 1987; Shaver & Hazan, 1988). Bowlby(1973)는 각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는 대인관계 양식이 주 양육자와 형성한 애착 유형(attachment style)에 근거한다고 했다. 즉 양육자의 반응성(responsibility)에 따라 자아 및 대인관계의 기본구조가 되는 내적작동모델(inner working models)을 형성하며 이 내적작동모델이 유대관계 형성 방식을 결정한다(Hazan & Shaver, 1987)는 것이다. 이에 따라 Hazan과 Shaver(1987)는 안정형(secure), 회피형(avoidant), 불안-양가형(anxious-ambivalent)의 세 가지 애착 유형이 성인기에 존재하며 성인 애착 유형에 따라 낭만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행동하는 방식, 특징적인 패턴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애착에 문제 발생하는 경우 성인기 대인관계 방식으로 이어져, 친밀한 파트너와 관계를 저해하게 된다(Hazan & Shaver, 1987; Meloy 1996; Kienlen et al., 1997).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은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에 근거해 안정형(secure), 거부형(dismissing), 몰두형(preoccupied), 두려움형(fearful)의 네 가지

성인 애착 유형을 구분했다. 몰두형 애착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질투가 심하며, 파트너에게 집착하고 파트너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친밀감을 원한다(Brennan & Shaver, 1998). Brennan과 Shaver(1998)에 따르면 몰두형 애착 유형은 비일관적인 양육자의 지지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인지된 애착 위협에 대한 역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파트너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지니며 상대를 의심하거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하다(Levy et al., 2005; Wheeler, 2002).

이러한 파트너의 집착은 스토커들에게 빈번한 심리적 특성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스토커들 대부분은 성인 애착 유형 중 집착 애착을 보였는데(Kienlen, 1998; Meloy, 2007; MacKenzie et al., 2008), 성인기 스토킹 행동과 애착 관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Kienlen(1998)은 성인 스토커의 60% 이상이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를 잃거나 분리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즉, 아동기 부모나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관계가 성인기 집착 애착 패턴을 초래하여 스토킹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집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몰두형 애착은 특히 관계 해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Barbara & Dion, 2000), 스토킹은 애착의 병리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Meloy, 1992; Douglas & Dutton, 2001; Dutton & Winstead, 2006). 사전 연구에 따르면 많은 스토커가 스토킹 행동 직전에 피해자와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며 분리에 대한 반응으로써 '근접성 추구(proximity seeking)'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Hazan & Shaver, 1987; Kienlen, 1998; Borochowitz & Eisikovits, 2002). 근접성 추구는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성인의 정서 조절 전략으로 파트너를 과도하게 관찰하고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렬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집착과 유사하다. 이러한 근접성 추구는 애착 대상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파트너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매달리고 통제할 수 있으며(Mikulincer & Shaver, 2007), 과도한 근접성 추구가 스토킹과 같이 이전 파트너를 쫓아다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몰두형(불안-양가형) 애착을 가진 개인은 집착, 소유욕, 절박함을 특징으로 하는 연애 스타일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Levy & Davis, 1988; Shaver & Hazan, 1988; Sperling & Berman, 1991). 파트너에게 집착하는 개인은 가까운 관계가 깨졌을 때 더 큰 혼란을 경험하고 이별에서 회복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

는다(Barbara & Dion, 2000; Feeney & Noller, 1992). 이러한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여러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이나 몰두형 애착이 스토킹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었고(Langhinrichsen-Rohling & Rohling, 2000; Tonin, 2004), Tonin(2004)은 고정 스토커(즉,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대상을 따르는 스토커)가 연쇄 스토커(즉, 여러 사람을 따르거나 성적 접촉을 의도로 하는 스토커)보다 집착애착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별 후 이전 파트너를 괴롭히고 스토킹하는 경향에는 불안애착이나 몰두애착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Davis, Ace, & Andra, 2000; Dye & Davis, 2003).

종합하면, 연인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의심을 지니는 집착 애착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 관계 종결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로써 파트너에게 지속적으로 몰두, 통제, 매달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가 종결된 이후 스토킹 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파트너의 집착 행동을 "파트너에 대해 강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파트너의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으로 정의하고 파트너의 집착 행동이 스토킹 피해에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 3. 파트너의 성격특성

#### 가. 반사회성 · 경계성 · 자기에성 성격특성

사전 연구에 따른 스토킹의 하위유형을 고려하면 관계를 맺은 적 없는 낯선 타인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대개 정신증적 망상을 지니는 한편, 연인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끝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복이나 통제의 동기를 지니는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스토킹의 인지,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신장애 유형은 성격장애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에성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B군 성격장애 특성이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Meloy, 1998; Meloy & Gothard, 1995; Mullen et al., 1999; Mullen, Pathe, & Purcell, 2001; Rosenfeld & Harmon, 2002).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수정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Text Revision; DSM-5-TR)에서는 병리적 성

격특성의 유사성에 기반해 성격장애를 A군, B군, C군으로 구분한다. 이때 B군 성격장애는 극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변덕스러운 특성을 지니며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해당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D 연속적인 행동양상이 주요 특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성적인 관계에서도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성향을 보이곤 한다.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도 불안정성과 현저한 충동성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실제적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핵심적 특징이다. 헤어짐이나 거절, 외부체계의 상실을 감지하면 자아상, 정동, 인지, 행동에 심각한 변화를 보이며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버림받을 것에 대한 강렬한 공포감과 부적절한 분노를 경험한다. 이러한 분노는 보호자나 연인이 자신을 방임하거나 원하는 것을 주지 않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혹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될 때 폭발하며 버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미친 듯한 노력은 자해나 자살 행동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곤 한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징은 과대성, 숭배에의 요구, 공감의 부족을 핵심으로 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자존감이 취약하기 때문에 비판이나 패배로 인한 상처에 매우 민감하고 무시, 분노 혹은 도전적인 반격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Mullen 등(2006)에 따르면 전 연인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부형 스토커(rejected stalker)의 경우 높은 비율로 반사회성, 자기애성 특성을 지니며 편집증적 경향이 있어 질투심과 의심성이 높은 특성을 지닌다. Meloy(1997; 1999)는 다른 스토킹 유형보다 이전 파트너를 스토킹하는 유형이 빈번한 이유는 스토커들이 주로 자기애성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관심받고자 하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거부되거나 버림받을 때 자기도취적 스토커의 질투심, 과대망상, 특권의식과 같은 특성이 발현되며 이전 파트너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거나 복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토킹을 할 수 있다. 스토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할 때마다 자기애적 상처가 발생하는데 수치심, 굴욕, 상실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분노, 보복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있다(Kienlen et al. 1997; Kamphuis & Emmelkamp, 2000; Douglas & Dutton, 2001). 경계선 성격을 지닌 스토커의 경우 피해자와 심리적 분리를 어려워하는 경향으로 인해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상대가 연인일 때 반복적인 집착 행위를 보일 수 있

고, 스토킹 행위나 상대방의 반응을 애정의 일종이라고 왜곡하여 문제의식은 부족한 경향이 있다. 경계성 성격 특성을 지닌 스토키의 경우 대부분이 여성이며 분노와, 집착,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다. Douglas와 Dutton(2001)은 전 파트너를 표적으로 삼는 스토키 대부분이 IPV 가해 유형인 "경계선/주기적" 유형과 유사하다는 가정(Dutton, 1988;1995)에 따라 그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이전 배우자를 스토킹한 스토키 유형과 "경계선/주기적" 가해자 모두 B군 성격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 불안정성, 애착 기능 장애, 원시적 방어, 약한 자아 강도, 질투, 분노, 물질 남용 및 유아기 트라우마가 특징적이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인지된 또는 실제 거부 또는 포기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Douglas & Dutton, 2001).

남성 스토키의 경우 반사회성,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빈번하고, 높은 분노와 통제, 복수에 대한 동기를 보인다(Meloy et al., 2001; Davis, Ace, & Andra, 2000). 반면, 여성 스토키의 경우 경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아 분노와 집착,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특징적이었다(Meloy et al., 2003).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여성 비하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성차별(통념)유형, 피해자에 대한 분노 또는 보복이 특징인 반사회성(충동성)유형, 자기정체성의 혼란의 문제를 피해자와 관계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조종(경계성)유형으로 스토킹 가해자 유형을 구분한 바 있으며 여성은 조종(경계성)유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Meloy(2001; 2003)의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이혜지, 이수정, 2023).

요약하면, 가학적인 욕구나 이득, 피해자에 대한 특권의식, 통제감을 목표로 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가해자의 경우 관계 단절에 대한 보복,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스토킹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자아도취적이고 불안정한 자기상으로 인해 대인관계 민감성을 보이는 자기애성 성격을 지닌 경우 이전 파트너에 대한 특권의식과 통제력을 행사하고자 착취적 관계를 형성하며 관계 단절 이후 파트너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을 되찾거나 거부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 보복의 수단으로써 스토킹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더불어 파트너의 거부에 과도하게 민감한 특성을 보이는 경계성 성격은 관계 단계 단절에 의한 위협과 정서적 고통으로 인해 스토킹 행위를 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B군 성격장애 중에서도 반사회성·자기애성·경계성 성격장애가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제3장 연구 방법

### 제1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이후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IRB 승인번호: 2-1041055-AB-N-01-2023-40). 연구 대상은 만 19세 이후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전국 소재 20-50대 성인 남녀 412명으로 하였으며 수거된 설문 중 불성실한 응답 49건이 제외되어 총 363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총 363명으로, 남자는 109명(30.0%), 여자는 254명(70.0%)이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29세 이하가 288명(79.3), 만 30세 이상~39세 이하가 64명(17.6%), 만 40세 이상~49세 이하가 9명(2.5%), 만 50세 이상이 2명(0.6%)로 만 19세 이상~29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2명(14.3%)였고, 대학교(4년제/전문대) 졸업이 272명(74.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졸업은 39명(10.7%)였다.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 141명(38.8%), 경기도 82명(22.6%), 광역시가 70명(19.3%)이었고 경상도가 30명(8.3%), 전라도 20명(5.5%), 충청도 15명(4.1%),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명(0.6%), 강원도는 1명(0.3%)로 나타나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직종은 사무직 종사자가 139명(38.3%)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대학교/대학원)은 79명(21.8%)였다.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44명(12.1%), 서비스직 종사자는 34명(9.4%), 판매 종사자는 23명(6.3%), 관리자는 16명(4.4%), 그 밖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조사자 6명(1.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명(2.8%), 단순노무직 종사자 8명(2.2%), 군인 1명(0.3%), 기타 (프리랜서, 주부)은 3명(0.8%)이었다.

교제 기간은 12개월 이상 ~ 23개월 이하가 143명(39.4%)로 가장 많았고,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가 76명(20.9), 7개월 이상~11개월 이하가 62명(17.1%), 6개월 이하가 47명(12.9%), 36개월 이상이 35명(9.7%)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63)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09	30.0
	여성	254	70.0
연령	만 19세 이상~29세 이하	288	79.3
	만 30세 이상~39세 이하	64	17.6
	만 40세 이상~49세 이하	9	2.5
	만 50세 이상	2	0.6
최종학력	고등학교	52	14.3
	대학교(4년제/전문대)	272	74.9
	대학원	39	10.7
거주지	강원도	1	0.3
	경기도	82	22.6
	경상도	30	8.3
	광역시	70	19.3
	서울특별시	141	38.6
	세종특별자치시	2	0.6
	전라도	20	5.5
	제주특별자치도	2	0.6
	충청도	15	4.1
직종	관리자	16	4.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4	12.1
	사무직 종사자	139	38.3
	서비스직 종사자	34	9.4
	판매 종사자	23	6.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	1.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	2.8
	단순 노무직 종사자	8	2.2
	군인	1	0.3
	학생(4년제/전문대)	79	21.8
	기타(프리랜서, 주부)	3	0.8
교제 기간	6개월 이하	47	12.9
	7개월 이상~11개월 이하	62	17.1
	12개월 이상~23개월 이하	143	39.4
	24개월 이상~35개월 이하	76	20.9
	36개월 이상	35	9.7

## 제2절 측정 도구

### 1. 스토킹 피해 척도

스토킹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이수정(2021)이 스토킹 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한 설문 중 스토킹 가해에 대해 묻는 문항(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스토킹 피해 지속기간 및 횟수를 묻는 문항(2개 문항), 가해자와 구체적인 관계 및 피해 당시 연령을 묻는 2개 문항을 추가하였고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경험한 교제 경험 및 스토킹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앞서 떠올린 연인관계 당사자로부터 경험한 스토킹 피해”에 체크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다. 스토킹 가해 문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수정(2021)의 연구에서 가해 유형에 대해 묻는 문항(10개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8였고 본 연구에서는 .82였다.

### 2.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피해 척도

친밀한 파트너 폭력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갈등척략척도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를 김정란과 김경신(1999)이 국내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심리(11문항)·신체(7문항)·성적 폭력(4문항)으로 구성되어 ‘내가 상대방에게 한 가해(22문항)’와 ‘상대방이 나에게 한 피해(22문항)’를 평정할 수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없음, 5점= 매우 자주)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빈번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 피해’ 22문항 중 성적·신체적 폭력만을 측정하는 1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김정란과 김경신(1999) 연구에서 신체적 폭력 피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3, 성적 폭력 피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9, .86으로 나타났다.



### 3. 통제 행동 척도

데이트폭력의 하위요인으로써 통제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2015)가 고안한 통제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한 행동제한 경험을 5점 Likert 척도(1=없음, 5=거의매일)로 평정한다. 문항으로는 ‘핸드폰, 이메일,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자주 점검했다’, ‘옷차림을 제한했다’, ‘씨클이나 모임 활동을 못하게 했다’ 등이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Cronbach  $\alpha$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 4. 집착 행동 척도

집착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우아미, 박준성과 정태연(2008)이 개발한 집착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래 ‘파트너와 관계에서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와 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수정하였다. 하위요인으로서는 파트너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외로움/불완전감’, 파트너에게 거절당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행동인 ‘거부 두려움’, 파트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행동인 ‘질투심’, 파트너의 애정에 대해 믿지 못하는 ‘의심’,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매우 민감하여서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는 행동인 ‘과민성’으로 구성된다.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는 총 38문항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착 행동이 빈번했음을 반영한다. 우아미 등(2008)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8이었고 본 연구에서 집착 피해경험으로 수정한 척도는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 5. DSM-5 성격질문지 정보제공자 보고형(PID-5-IRF)

피해자가 평정한 가해자의 반사회성·경계성·자기애성 성격특성을 파악하고자 한국판 DSM-5 성격검질문지 정보제공자보고형(K-PID-5-IRF)를 사용하였다. PID-5(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Krueger, Derringer, Markon, Waston, & Skodol, 2012)는 DSM-5의 section III에서 소개된 성격장애의 차원적 모델인 병리적 성격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이다. 5가지 영역(domain)과 25가지 양상(facet)으로 구성된 병리적 성격특질 모델로 성격장애와 관련된 부적응적인 성격특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안선영, 황순택, 2019).

성격장애를 지닌 개인의 경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안선영, 황순택, 2019), 특히 자기애성,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보고형 검사에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Westen & Heim, 2003).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 개인을 잘 알고 있는 제3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DSM-5 성격검사 정보제공자보고형(PID-5-IRF)이 개발되었고(Markson, Quilty, bagby, & Krueger, 2013) 국내에서는 안선영 등(2019)이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DSM-5 성격검사 정보제공자보고형(PID-5-IRF)은 PID-5 자기보고형 문항을 수정하여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0점=매우 아닙니다, 3점=매우 그렇다)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핵심양상인 적개심(10문항), 냉담성(14문항), 조종(5문항), 충동성(6문항), 위협 감수(14문항), 무책임성(7문항), 기만(10문항)을 반영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양상인 위협 감수(14문항), 적개심(10문항), 충동성(6문항), 감정가변성(7문항) 문항,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핵심양상인 관심 추구(8문항)를 사용하였다. 안선영, 황순택(2019)의 연구에서 PID-5 자기보고형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평균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평균 .87로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표 2>과 같다. 본 척도는 각 성격장애의 핵심양상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해당 성격특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2> PID-5 정보제공자보고형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n=363)

성격장애	성격 양상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적개심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10	.942
반사회성/ 경계성	충동성	76, 77, 78, 79, 80*, 81	6	.845
	위험감수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4	.826
	냉담성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4	.924
반사회성	조종	71, 72, 73, 74, 75	5	.895
	기만	16, 17, 18, 19, 20, 21, 22*, 23, 24	10	.785
	무책임성	40, 41, 42, 43, 44, 45, 46*	7	.847
경계성	감정가변 성	1, 2, 3, 4, 5, 6, 7	7	.915
자기애성	관심추구	8, 9, 10, 11, 12, 13, 14, 15	8	.915

\* 역채점 문항 22, 32, 46, 48, 49, 54, 55, 58, 60, 80 (총 10문항)

### 제3절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 27.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스토킹 피해 경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아 Mann-Whitney U test를 실시 후 스토킹 피해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 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중앙값[사분위수]를 이용하여 표기하였다.

셋째, 스토킹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4장 연구 결과

### 제1절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실태

연구대상자의 스토킹 피해실태는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단 한 가지 유형의 스토킹 피해라도 경험한 경우는 219명(60.3%)이었고, 스토킹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는 144명(39.7%)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는 116명(32.0%)으로 가장 빈번했고, ‘전화·편지·SNS 등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는 94명(25.9%),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또는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 있는 행위’는 93명(25.6%), 인터넷, 공공장소 또는 구두를 통해 나에게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44명(12.1%)이었다. 이밖에 ‘나와 사귀는 것처럼 혹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는 행위’는 43명(11.8%),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특정 물건·그림·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는 40명(11.0%),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36명(9.9%)로 나타났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25명(6.9%), ‘집 또는 차 등 나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위’는 32명(8.8%),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나인 척 행세를 하고 다녔다(SNS 계정 생성 등)’은 32명(8.8%)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 당시 연령은 만 19세 이상~29세 미만이 205명(56.5%)로 가장 많았고, 만 30세 이상~29세 이하가 13명(3.9%), 만 40세 이상~49세 이하가 1명(0.6%)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스토킹 피해 시점은 관계 종결 후 1개월 이내가 87명(24.0%), 1~3개월 뒤가 82명(22.6%), 3~6개월 뒤가 46명(12.7%), 6~12개월 뒤가 4명(1.1%), 으로 관계 종결 후 1개월 이내 혹은 1~3개월 이내에 스토킹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 기간은 1개월 이내가 111명(30.6%), 1~3개월 사이가 66(18.2%), 3~6개월 사이가 31명(8.5%), 6개월~12개월 사이가 7명(1.9%), 12개월 이상이 4명(1.1%)으로 나타나 1개월 이내 혹은

1~3개월 가량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빈도는 일주일에 1번이 83명 (22.9%)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한 번 64명(17.6%), 일주일에 2번~3번 41명(11.3%), 이주에 한 번이 24명(6.6%), 거의 매일 7명(1.9%) 순으로 많았다. 더불어 가·피해자의 구체적 관계 유형은 동거 경험이 없는 전 연인이 121명(33.3%), 동거 경험이 있는 전 연인이 96명(15%), 별거 상태인 배우자가 1명(0.3%), 전 배우자가 1명(0.3%)으로 동거 경험이 없는 전 연인 관계가 가장 빈번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스토킹 피해실태

(n=363)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피해 여부	있음	219	60.3
	없음	144	39.7
피해 유형 *복수응답	접근·미행	116	32.0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또는 그 지역에 와서 지켜보거나 서 있음	93	25.6
	전화·편지·SNS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문자 등을 보냄	94	25.9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특정 물건·그림·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둠	40	11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	36	9.9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	25	6.9

	인터넷, 공공장소 또는 구두를 통해 나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44	12.1
	집 또는 차 등 나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겁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	32	8.8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나인 척 행세를 하고 다님 (SNS 계정 생성 등)	32	8.8
	나와 사귀는 것처럼 혹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	43	11.8
피해 연령	19세 이상~29세 이하	205	56.5
	만 30세 이상~39세 이하	13	3.6
	만 40세 이상~49세 이하	1	0.3
	없음	144	39.7
피해 시점	관계 종결 후 1개월 이내	87	24.0
	관계 종결 후 1~3개월 뒤	82	22.6
	관계 종결 후 3~6개월 뒤	46	12.7
	관계 종결 후 6~12개월 뒤	4	1.1
	없음	144	39.7
기간	1개월 이내	111	30.6
	1~3개월 사이	66	18.2
	3~6개월 사이	31	8.5
	6~12개월 사이	7	1.9
	1년 이상	4	1.1
	없음	144	39.7
빈도	한 달에 1번	64	17.6
	이주에 1번	24	6.6
	일주일에 1번	83	22.9
	일주일에 2~3번	41	11.3
	거의 매일	7	1.9
	없음	144	39.7
관계 특성	전 연인(동거 경험 없음)	121	33.3
	전 연인(동거 경험 있음)	96	26.4
	배우자 (별거)	1	0.3
	전배우자	1	0.3
	없음	144	39.7

## 제2절 주요변수 기술통계

주요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신체적 폭력은 35점 만점에 평균 13.46점(표준편차 6.51점), 성적 폭력은 20점 만점에 7.75점(표준편차 3.98)으로 나타났다. 집착행동은 190점 만점에 95.98점(표준편차 31.99점)이었으며 통제행동은 55점 만점에 평균 27.88점(표준편차 10.98)이었다.

반사회성과 경계성 성격장애의 핵심 양상인 위험 감수는 42점 만점에 평균 20.36점(표준편차 8.29점), 적개심은 30점 만점에 평균 15.55점(표준편차 8.76), 충동성은 18점 만점에 9.63점(표준편차 4.71점)이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핵심양상인 기만은 30점 만점에 평균 13.50점(표준편차 6.29), 냉담성은 43점 만점에 평균 18.63점(표준편차 10.31점), 무책임성은 21점 만점에 평균 9.50점(표준편차 5.38점), 조종은 15점 만점에 7.67점(표준편차 4.42점)이었다.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의 핵심 양상인 감정가변성은 35점 만점에 평균 10.95점(표준편차 6.04),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성격 특질인 관심추구는 24점 만점에 평균 12.26점(표준편차 6.97점)이었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n=363)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IPV 요인	신체적 폭력	7	33	13.46	6.516
	성적폭력	4	19	7.75	3.987
	통제 요인	통제 행동	11	55	27.88
	집착 행동	38	178	95.98	31.992
파트너 성격특성	적개심	0	30	15.55	8.765
	충동성	0	18	9.63	4.719
	위험 감수	0	42	20.36	8.293
	냉담성	0	42	18.63	10.314
	조종	0	15	7.67	4.424
성격특성	기만	0	30	13.50	6.291
	무책임성	0	21	9.50	5.386
	감정가변성	0	21	10.96	6.040
	관심추구	0	24	12.26	6.972



### 제3절 스토킹 피해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 차이

스토킹 피해에 따라 주요변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Mann-Whitney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IPV 요인은 스토킹 피해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신체적 폭력은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14), 없을 때(Mdn=7)보다 더 높았다( $U=9249$ ,  $Z=-6.741$ ,  $p<.001$ ). 성적 폭력도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8), 없을 때(Mdn=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9265$ ,  $Z=-6.774$ ,  $p<.001$ ).

통제 요인 역시 스토킹 피해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파트너의 통제 행동은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33), 없을 때(Mdn=19)보다 높았으며( $U=7762$ ,  $Z=-8.192$ ,  $p<.001$ ), 파트너의 집착 행동은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103), 없을 때(Mdn=78)보다 높았다( $U=7069.5$ ,  $Z=-8.896$ ,  $p<.001$ ).

파트너의 성격 특성요인의 경우, 반사회성·경계성·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성 모두 스토킹 피해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반사회성 성격과 경계선 성격의 핵심양상을 살펴보면, 적개심은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19), 없을 때(Mdn=10)보다 높았으며( $Z=-6.286$ ,  $p<.001$ ). 충동성도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12), 없을 때(Mdn=6) 높았다( $U=7481$ ,  $Z=-8.495$ ,  $p<.001$ ). 위협 감수 역시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22), 없을 때(Mdn=17)보다 높게 나타났다( $U=9363.5$ ,  $Z=-6.554$ ,  $p<.001$ ). 반사회성 성격의 핵심양상인 냉담성은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23), 없을 때(Mdn=12.5) 높았고( $U=8850$ ,  $Z=-7.077$ ,  $p<.001$ ), 조종도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10), 없을 때(Mdn=5.5)보다 높았다( $U=9352$ ,  $Z=-6.585$ ,  $p<.001$ ). 기만은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15), 없을 때(Mdn=11) 높았고( $U=8443.5$ ,  $Z=-7.502$ ,  $p<.001$ ), 무책임성도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11), 없을 때(Mdn=7)보다 높았다( $U=10889$ ,  $Z=-4.997$ ,  $p<.001$ ). 경계선 성격의 핵심양상인 감정가변성은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14), 없을 때(Mdn=7)보다 높았으며( $U=8812$ ,  $Z=-7.124$ ,  $p<.001$ ), 마지막으로 자기애성 성격의 핵심양상인 관심추구는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Mdn=15), 없을 때(Mdn=9)로 높게 나타났다( $U=9124$ ,  $Z=-6.802$ ,  $p<.001$ ).

<표 5> 스톡킹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 차이

(n=363)

주요변수	스톡킹 피해			
	있음(N=219) Median[IQR]	없음(N=144) Median[IQR]	U	Z
신체적 폭력	14.00[9.00, 19.00]	7.00[7.00, 14.75]	9249.00	-6.741***
성적 폭력	8.00[5.00, 11.00]	4.00[4.00, 7.75]	9265.00	-6.774***
통제	33.00[25.00, 38.00]	19.00[12.00, 31.75]	7762.00	-8.192***
집착	103.00[85.00, 129.00]	78.00[54.00, 93.00]	7068.50	-8.896***
적개심	19.00[13.00, 23.00]	10.00[1.25, 20.00]	9628.00	-6.286***
충동성	12.00[9.00, 14.00]	6.00[3.00, 11.00]	7481.00	-8.495***
위험감수	22.00[19.00, 28.00]	17.00[11.00, 23.00]	9363.50	-6.554***
냉담성	23.00[16.00, 28.00]	12.50[3.00, 23.00]	8850.00	-7.077***
조종	10.00[7.00, 12.00]	5.50[2.00, 9.00]	9352.00	-6.585***
기만	15.00[12.00, 18.00]	11.00[3.24, 14.75]	8443.50	-7.502***
무책임성	11.00[8.00, 14.00]	7.00[3.00, 12.00]	10889.00	-4.997***
감정가변성	14.00[10.00, 16.00]	7.00[2.00, 13.00]	8812.00	-7.124***
관심추구	15.00[10.00, 19.00]	9.00[3.00,15.00]	9124.00	-6.802***

\* $p<.05$ , \*\* $p<.01$ , \*\*\* $p<.001$

## 제4절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

### 1. 주요변수 간 상관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7>과 같다.

이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는 신체적 폭력( $r=.284, p<.001$ ), 성적 폭력( $r=.286, p<.001$ ), 감정가변성 ( $r=.383, p<.001$ ), 관심추구( $r=.366, p<.001$ ), 무책임성( $r=.265, p<.001$ ), 위험감수( $r=.337, p<.001$ ), 적개심( $r=.350, p<.001$ ), 조종( $r=.342, p<.001$ ), 냉담성( $r=.392, p<.001$ ), 통제( $r=.442, p<.001$ ), 집착( $r=.462, p<.001$ ), 기만( $r=.419, p<.001$ ), 충동성( $r=.476, p<.001$ )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변수 간  $r$ 값이 0.9보다 클 경우 분석에 문제가 발생하며 0.8이상 이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양병화, 2006),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정도가 .80이하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결과, 공차한계는 0.1 이상이었으며 VIF는 10에 근접한 값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요변수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신체적폭력	1											
2. 성적폭력	.761***	1										
3. 집착행동	.188***	.174**	1									
4. 통제행동	.408***	.385***	.623***	1								
5. 감정가변성	.266***	.248***	.509***	.469***	1							
6. 관심추구	.269***	.253***	.340***	.397***	.679***	1						
7. 기만	.295***	.225***	.568***	.521***	.663***	.624***	1					
8. 냉담	.425***	.383***	.333***	.470***	.541***	.581***	.608***	1				
9. 무책임	.243***	.198***	.335***	.380***	.499***	.484***	.607***	.688***	1			
10. 위험감수	.331***	.305***	.302***	.392***	.525***	.611***	.558***	.759***	.644***	1		
11. 적개심	.363***	.334***	.364***	.465***	.561***	.532***	.577***	.742***	.580***	.615***	1	
12. 조종	.301***	.266***	.364***	.376***	.445***	.473***	.493***	.627***	.480***	.585***	.741***	1
13. 충동성	.385***	.391***	.409***	.490***	.595***	.604***	.622***	.666***	.555***	.697***	.751***	.683***
14. 스토킹	.284***	.286***	.462***	.442***	.383***	.366***	.419***	.392***	.265***	.337***	.350***	.342***

\*  $p < .05$ , \*\*  $p < .01$ , \*\*\*  $p < .001$

## 2.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앞서 각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은 IPV 요인, 통제 요인, 파트너 성격특성 요인 순으로 투입하였으며 새로운 단계에서는 새롭게 검증하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각 단계마다 구성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1단계:  $\text{logit}(Y) = B_0 + B_1(\text{IPV 요인})$

2단계:  $\text{logit}(Y) = B_0 + B_1(\text{IPV 요인}) + B_2(\text{통제 요인})$

3단계:  $\text{logit}(Y) = B_0 + B_1(\text{IPV 요인}) + B_2(\text{통제 요인}) + B_3(\text{파트너 성격특성요인})$

Model 1은 IPV 요인만을 투입한 모델로 절편만 있는 Null Model에 비해 -2LL 통계치가 작아져 이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2LL: 487.617→450.933, Model Chi-square=36.684,  $p < .001$ ),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Cox와 Snell R<sup>2</sup>와 Nagelkerke R<sup>2</sup>은 각각 0.096과 0.130으로 투입된 IPV 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설명력은 약 9.6~13%로 나타났다. 또한 관측된 결과와 예측값을 비교한 분류 정확도는 60.3%로 나타났다. 투입된 IPV 변수 중에서는 신체적 폭력(OR=1.059,  $p < .05$ ), 성적 폭력(OR=1.107,  $p < .05$ )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각각 1.059배 증가하고 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1.10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Model 1에 통제 요인을 추가한 모델로 이전 모델에 비해 -2LL 통계치가 낮아지고(-2LL Chage:450.933→371.789), Model Chi-square와 Step Chi-square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Model Chi-square=115.818,  $p < .001$ , Step Chi-square=79.135,  $p < .001$ ). 이는 Model 2의 모델적합도가 이전 모델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새롭게 투입된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요인이 파트너의 통제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Model 2의 설명력은 약 27.3%~37%로 나타났고 분류 정확도는 74.9%로 이전 모델보다 높아졌다. Model 2에서는 이전 모델에서 유의했었던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된 파트너의 통제 행동(OR=1.035,  $p < .05$ )과 집착 행동(OR=1.032,  $p < .001$ )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파트너의 통제 행동이 한 단계 증가할 때 1.035배

증가하고 파트너의 집착 행동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스토킹 피해 가능성은 1.0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은 Model 2에 파트너 성격 요인을 추가한 모델로 이전 모델에 비해 -2LL 통계치가 낮아지고(-2LL Chage:371.789→338.133), ModelChi-square와 Step Chi-square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ModelChi-square=149.484,  $p<.001$  ,Step Chi-square=33.665,  $p<.001$ ). 이는 Model 3의 모델적합도가 이전 모델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새롭게 투입된 파트너의 성격 특성요인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Model 3의 설명력은 약 33.8%~45.7%로 나타났고 분류 정확도는 77.1%로 이전 모델보다 높아졌다. Model 3에서는 이전 모델에서 유의했었던 파트너의 집착 행동(OR=1.029,  $p<.001$ ), 새롭게 추가된 충동성(OR=1.219,  $p<.001$ )과 냉담성(OR=1.062,  $p<.05$ )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스토킹 피해 가능성은 파트너의 집착 행동이 한 단계 증가할 때 1.029배, 파트너의 충동성이 한 단계 증가할 때 1.219배, 파트너의 냉담성이 한 단계 증가할 때 1.06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스톡킹 피해 위험요인

(n=363)

		Null Model/Model 1		Model 2		Model 3
		Wald	Exp(B)	Wald	Exp(B)	Wald
IPV 요인	신체적 폭력	<b>4.203*</b>	<b>1.059</b>	0.405	1.020	0.002
	성적 폭력	<b>4.757*</b>	<b>1.107</b>	3.386	1.098	1.160
통제 요인	통제			<b>4.818*</b>	<b>1.035</b>	1.157
	집착			<b>28.494***</b>	<b>1.032</b>	<b>19.028***</b>
파트너 성격 요인	적개심					3.604
	충동성					<b>13.865***</b>
	위험 감수					1.574
	냉담성					<b>5.174*</b>
	조종					0.032
	기만					0.539
	무책임성					1.981
	감정가변성					0.119
	관심추구					1.009
Model Chi-square		N/A	36.684***	115.818***		149.484***
Step Chi-square		N/A	36.684***	79.135***		33.665***
-2 log likelihood		487.617	450.933	371.789		338.133
Nagelkerke R2(Cox & Snell R2)		N/A	0.130(0.096)	0.37(0.273)		0.457(0.338)
Classification Accuracy(%)		60.3		74.9		77.1

\* $p < .05$ , \*\* $p < .01$ , \*\*\* $p < .001$

## 제5장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스토킹 피해가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IPV 피해 및 파트너의 통제, 파트너의 B군 성격장애 특성과 관련이 깊다는 사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 이후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20대~50대 성인남녀 36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스토킹 피해 경험에 따른 각 위험요인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으며, 각 위험요인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피해 경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20대~50대 성인 남녀의 스토킹 피해경험을 살펴본 결과, 만19세 이후 이성교제 대상으로부터 한 가지 유형의 스토킹 피해라도 경험한 경우는 60.3%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 기간 및 빈도는 1개월 이내, 일주일에 1번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밀한 파트너를 스토킹하는 평균 기간이 약 2.2년으로 친밀하지 않은 대상을 스토킹하는 평균 1년의 기간보다 2배 이상 길었다는 선행 연구(Brewster, 2003)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스토킹을 정의할 때 빈도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본 연구와 같이 스토킹을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로만 정의하는 것은 너무 넓은 범위에 해당하여 스토킹 피해율이 과대추정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인식이 높은 피해 발생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70%가 여성에 해당하며 남성과 교제 이후 스토킹 피해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권혜림(2022)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사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구애 과정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특히 연인과 헤어진 경우에는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스토킹 행위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음을 보여 남성에게 스토킹 행위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났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스토킹 피해 경험에 따른 스토킹 인식을 분석한 박예은, 곽대은(2021)의 연구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스토킹을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의 집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스토킹이 아는 사람, 특히 (전)애인 및 (전)배우자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전 파트너



에게 경험한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스토킹 피해 당시 연령은 만 19세 이상~29세 미만이 205명(56.5%)로 가장 많았고, 만 30세 이상~29세 이하가 13명(3.9%), 만 40세 이상~49세 이하가 1명(0.6%)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이는 스토킹 평생 피해 경험률이 19~29세 4.1%, 30~39세 3.1%, 40~49세 3.2%, 50~59세 1.9%, 60세 이상 1.4%로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토킹 경험률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여성가족부, 2022). 가·피해자의 구체적 관계 유형은 동거 경험이 없는 전 연인이 121명(33.3%), 동거 경험이 있는 전 연인이 96명(15%), 별거 상태인 배우자가 1명(0.3%), 전 배우자가 1명(0.3%)으로 동거 경험이 없는 전 연인 관계가 가장 빈번했다. 이는 비혼·미혼(4.3%)보다 별거·이혼(6.5%) 상태인 배우자에게 가장 빈번했다는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2021)와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20대에 해당하여 미혼자의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토킹 피해 시점은 관계 종결 후 1개월 이내(24.0%)가 가장 빈번했는데 이는 이전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의 경우 관계가 종결된 직후 관계를 재개하고자 하는 반응이나 분노 반응으로써 스토킹을 하게 된다는 Meloy(1998), Mullen 등(1999)과 Sheridan & Boon(2001)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스토킹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10개의 스토킹 유형 중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32.0%), ‘전화·편지·SNS 등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25.9%),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또는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 있는 행위’(25.6%)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거 친밀했던 사이였던 경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나 ‘전화, 편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 그림, 문자 등을 보냄’과 같은 유형의 스토킹 행위가 더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이수정, 2021)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행위가 빈번한 이유는 ‘연인 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 생활패턴, 집이나 학교, 직장, 관심사 등에 대해 이미 알고있어서’, ‘공통의 지인에게 다른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알아내기 쉬워서’ 일 것으로 보인다(이수정, 2021).

연구 문제1-1. 스토킹 피해 경험에 따라 IPV 피해 요인, 통제 요인, 파트너의

성격특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IPV 피해 요인에서는 스토킹 피해가 있을 때 신체적·성적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했으며 통제 요인에서는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경우 교제 당시, 파트너의 통제 행동 및 집착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IPV 피해자에 비해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IPV 피해자가 관계가 지속됐을 당시 더욱 심각한 신체·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연구(Logan, Shannon, & Cole, 2007)나 스토킹을 하지 않는 IPV 가해자들에 비해, 스토킹을 한 IPV 가해자들이 일반적으로 더 통제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연구와 유사하다(Melton, 2007). 더불어 이별 후 이전 파트너를 괴롭히고 스토킹하는 경향에는 몰두 애착이 작용하며(Davis, Ace, & Andra, 2000; Dye & Davis, 2003; Langhinrichsen-Rohling & Rohling, 2000), 파트너의 관심을 얻기 위해 매달리고 통제하는 집착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전 연구 결과(Mikulincer & Shaver, 2007)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파트너 성격 요인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파트너의 성격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스토킹 피해자의 파트너가 반사회성 성격특성(냉담성, 조종, 기만, 무책임성, 적개심, 충동성, 위협감수)과 경계성 성격특성(감정가변성, 적개심, 충동성, 위협 감수), 자기애성 성격특성(관심추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1-2. IPV 피해요인, 통제 요인, 파트너의 성격특성 요인 중 스토킹 피해 집단을 예측해주는 요인은 통제 요인 중 파트너의 집착 행동, 파트너의 성격특성 요인 중 냉담성과 충동성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의 집착 행동이 1점 증가할 때 스토킹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1.029배 증가했으며, 파트너의 충동성 및 냉담성 성격특성이 1점 증가할 때 스토킹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각각 1.219 배, 1.062배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국 ‘파트너에게 강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파트너에 대한 사랑을 잠시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집착 행동이나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친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영향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후회하지 않는’ 냉담성의 특성, ‘즉각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정서적 스트레스 하에 발생하는 급박감, 자해행동’을 보이는 충동적 특성이 스토킹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스토커들에게 애착대상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근접성 추구(proximity seeking) 행동이 빈번하며 애착 대상인 피해

자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써 스토킹 행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전 연구 결과(Borochowitz & Eisikovits, 2002; Hazan & Shaver, 1987; Kienlen, 1997)를 지지한다. 또한 성격장애의 DSM-5 대안적 성격 모델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한 Gamache(2023)연구에서도 충동성이 남성의 스토킹 가해를 예측하는 핵심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냉담성은 반사회성 성격특성의 핵심양상으로 스토킹의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형태의 침해행위를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의도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기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평판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데서 스토킹 행위가 발현됐을 것으로 추측된다(Spitzberg & Veksler, 2007). 즉, 이 경우는 전 연인과 관계 회복에 대한 동기보다는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 복수의 동기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반면, IPV 변수 중 신체적 폭력 및 성적폭력은 스토킹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PV 피해가 스토킹 피해와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결과(Norris, Huss & Palarea, 2011)와 대조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신체·성적 폭력과 같은 심각한 폭력피해 유형이 스토킹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Senkans, McEwan, & Ogloff, 2021; Burgess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피해와 신체적 폭력의 상관계수가 .284( $p<.001$ ), 성적폭력과 상관계수가 .286( $p<.001$ )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상관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통제 요인 중에서는 파트너의 통제 행동이, 파트너의 성격특성 요인 중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핵심양상인 적개심, 위협감수, 조종, 기만, 무책임성이 스토킹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의 핵심양상인 적개심, 위협감수, 감정가변성 역시 스토킹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핵심양상인 관심추구 역시 스토킹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반사회성, 경계성, 자기에성 성격특성과 같은 B군 성격장애 특성을 지닌다는 사전 연구 결과 (Meloy, 1998; Meloy & Gothard, 1995; Mullen et al., 1999; Mullen, Pathe, & Purcell, 2001; Rosenfeld & Harmon, 2002) 와 상반된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PV와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과 유의한 선행 연구(Norris, Huss, & Palarea, 2011)의 경우 스토킹 행위를 원거리 접촉(예. 원치 않는 전화), 근거리 접촉(예. 원치 않는 방문), 위협 행동(예. 자살 협박), 유해한 행동(예. 피해자의 반려견을 폭행)으로 강도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IPV 역시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상해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강도가 심각한 스토킹 행위가 더 높은 수준의 IPV와 관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IPV와 스토킹의 관계를 분석한 Senkans 등(2021) 역시 IPV의 강도를 낮음(예. 심각한 심리적 공격이 10회 미만), 보통(예. 경미한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이 10회 이상), 높음(예. 심각한 신체 폭력 및 성적 폭력이 50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보통 수준의 IPV를 경험한 여성의 절반 미만이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으며 심각한 IPV를 경험한 여성은 3분의 2 이상이 학대 관계가 끝난 후 스토킹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IPV의 존재 자체보다는 IPV의 강도나 스토킹 행위의 심각성이 스토킹과 IPV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둘째, 통제 행동은 파트너를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한 개인을 고립시키는 것, 이동을 감시하는 것, 금전적 자원, 취업, 교육이나 의료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Brewster(2003)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한 뒤 갚지 않거나, 재산을 훔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에 진화를 하겠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제정적 통제를 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피해자를 금전, 취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지속하려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제 행동척도는 주로 ‘핸드폰, 이메일,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자주 점검했다’, ‘옷차림을 제한했다’, ‘씨클이나 모임 활동을 못하게 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통제만을 반영했다는 점이 스토킹 피해를 예측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을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에게 강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파트너에 대한 사랑을 잠시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인 집착 행동이 스토킹 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애착의 관점에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전 친밀한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렬한 관계에 관여할 가능성은 낮은 경향이 있다(Meloy & Gothard, 1995; Kienlen et al., 1997; Meloy, 1998; Douglas & Dutton,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기애성 성격특성 역시 관계가 거부당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특권의식, 통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로 스토킹을 하게 되므로 파트너에게 강하게 의존하고 몰두하는 집착 성향에 의한 스토킹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Douglas와 Dutton(2001)은 경계선 성격을 지닌 스토킹자의

경우 유기불안이 핵심적 특징이라고 강조했는데, 연인과 심리적 분리를 어려워하는 성향은 반복적인 집착 행위를 보일 수 있고, 스토킹 행위나 상대방의 반응을 애정의 일종이라고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계성 성격의 핵심양상을 감정가변성, 적개심, 충동성, 위험 감수의 4가지 양상을 통해 측정하여 중요한 타인에 의한 거부 민감성, 유기불안과 같은 애착 기능의 장애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스토킹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스토킹 행위를 “친밀한 관계가 종결된 상대방(전연인, 전 배우자, 기혼 중 별거)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스토킹 행위의 핵심인 지속성과 반복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박철현(2000)은 스토킹이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 기분에 맞지 않게 계속 따라다니거나 접근을 시도하고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데서 나아가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할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원하지 않는 접근과 접촉을 시도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상대가 ‘지속’되어 결국 그 이상의 신체적 피해가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통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박철현, 2000). 따라서 ‘피해자에게 두려움이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복적인 원치 않는 침입이나 통신이 최소 4주 동안 최소 10회 이상 지속될 경우(Frank Farnham, & David Jame, 2000)’와 같이 스토킹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지속성과 반복성 측면을 반영한 스토킹 발생률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스토킹의 행위 수단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으며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행위 수단들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박철현, 이상용, & 진수명, 2000),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강도(SNS를 통한 지속적 연락)에서 상당히 심각한 강도(물리적 위협, 자살 협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 유형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스토킹 피해자의 입장에서 파트너와의 기억을 회상하여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회상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가해자의 부정적 특성이나 피해 경험을 과대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 시점이 피해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하고, 스토킹 가해자의 IPV 및 통제, 집착 행동, 성격특성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가해자와 동거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 해당했

기 때문에 별거 중인 현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 의한 스토킹 행위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피해자가 부부일 때는 자녀와 같은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가 흔하며 피부양자가 함께 2차적 피해자가 되거나 1차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Nicastro et al, 2000) 더욱 심각한 스토킹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에 따라 스토킹 피해 및 위험 요소에 차이가 있는지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교제 할 당시의 관계적 특성이나 가해자의 성격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을 탐색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국,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제 당시에 파트너의 집착 행동이나, 상대방의 고통의 냉담한 성향, 자해 행동과 같이 정서적 고통에 급박하게 반응하는 경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치료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연인을 스토킹 하는 스토키의 경우 애착 대상에 대한 높은 집착을 보이며 관계 종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스토키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관심사를 찾도록 대인관계 상황 및 사회적 역할을 재확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상실감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격려가 이루어진 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이자 범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강한 감정과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스토킹 행동에 핵심적 역할이다(Davis, Swan, & Gambone, 2012). 따라서 충동성 및 자해 행동을 비롯한 통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예를 들어 Rosenfeld(2019)는 Linehan(1993)의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한 바 있다. 마음 챙김, 고통 감내, 정서조절, 대인관계 효용성 기술이 핵심 치료요소이며 주로 강한 감정과 충동을 관리하는 구체적 기술을 교육한다. 따라서 스토킹과 관련한 욕구와 사고를 관찰하고, 분노, 좌절, 외로움 등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한 인내심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충동성이 두드러지는 스토키는 다른 유형의 범죄자나 일반 정신과 환자보다 자살 위험이 더 크고, 자살 사고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집중 개입이 필요하다(Rosenfeld, 2019).

셋째, 냉담성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경우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자

신을 거부한 파트너에 대한 보복이 주된 동기일 수 있다. 이 경우 형사 기소, 투옥과 같이 스토킹 행위로 처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스토킹 행위는 대체관계, 대체활동, 법률적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스토키가 피해자에게 접촉, 위협, 감시를 시도하면서 어떤 영향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해시키는 것(Mullen et al.,2000)이 도움을 줄 것으로 시사된다.

## 참고 문헌

- 권혜림 (2022). 일반인들의 스토킹 행위 범죄성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8(2), 1-19.
- 김길환 (2022). 이동주, "「스토킹처벌법」 이후 7152명 검거...가해자 남성이 여성 4배, 로리더.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5>
- 김성희, & 이수정. (2022).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矯正研究, 32(2), 117-152.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8), 73-90.
- 김진숙, 문화진 (2021). 성인 남녀의 통제 행동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젠더 감수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727-741.
- 박상진 (2022). 스토킹처벌법 시행1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 세미나자료집. 서울: 경찰청
- 박예은, & 광대훈. (2022). 세대 차이에 따른 스토킹 인식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8(3), 49-64.
- 박철현, 이상용, & 진수명. (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141.
- 안선영, 황순택 (2019).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 정보제공자보고형 (K-PID-5-IRF) 의 신뢰도와 타당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1), 82-101.
- 여성가족부 (2021). "평생 스토킹의 가해자 유형" 조사 결과
-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 집착행동의 구성요인 및 집착행동이 이성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21-546.
- 이건호 (2004).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57, 191-244.
- 이상철, 김평수 (2002).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대책. 시큐리티 연구, 5, 263-289.
- 이수정 (2021).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경기대, 2021
- 이재민 (2022). 스토킹 범죄와 민간경비의 필요성.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8(



- 4), 778-785.
- 이혜지, 이수정(2023). 스토킹 범죄자의 왜곡된 인식에 따른 심리적 유형분류 및 성격특성의 이해: 성차별의식과 MMPI-2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4(2), 56-85.
- 5.
- 조국 (2000).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대응. *인간과 정치*, 287, 46-56.
- 조희진 (1999). 스토킹 방지법 제정에 관한 법률적 측면. *시민과 변호사*, 66, 82-91.
- 통계청 (2022). 「여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91.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test rev.). Washington DC: Author.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The effects of media violence on society. *Science*, 295(5564), 2377-2379.
- Barbara, A. M., & Dion, K. L. (2000). Breaking up is hard to do, especially for strongly “preoccupied” lovers. *Journal of personal & interpersonal loss*, 5(4), 315-34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 - 244.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 - 33.
- Boon, J. C., & Sheridan, L. (2001). Stalker typologies: A law enforcement perspective. *Journal of Threat Assessment*, 1(2), 75-97.
- Borochowitz, D. Y., & Eisikovits, Z. (2002). To love violently: Strategies for reconciling love and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8(4), 476 - 494.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In *Attachment and loss. volume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429.

- Brennan, K. A., & Shaver, P. R. (1998). Attachment styles and personality disorders: Their connections to each other and to parental divorce, parental death, and perceptions of parental caregiving. *Journal of personality*, 66(5), 835-878.
- Brewster, M. P. (2003). Power and Control Dynamics in Prestalking and Stalking Situation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4), 207 - 217.
- Burgess, A. W., Harner, H., Baker, T., Hartman, C. R., & Lole, C. (2001). Batterers stalking pattern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3), 309-321.
- Coleman, F. L. (1997). Stalking behavior and the cycle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3), 420 - 432.
- Davis, K. E., Ace, A., & Andra, M. (2000). Stalking perpetrators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partners: Anger-jealousy, attachment insecurity, need for control, and break-up context. *Violence and Victims*, 15(4), 407-425.
- Davis, K. E., Swan, S. C., & Gambone, L. J. (2012). Why doesn't he just leave me alone? Persistent pursuit: A critical review of theories and evidence. *Sex Roles*, 66, 328-339.
- Douglas, K. S., & Dutton, D. G. (2001). Assessing the link between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6), 519 - 546.
- Dutton, D. G. (1988). Profiling of wife assaulters: Preliminary evidence for a trimodal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3(1), 5-29.
- Dutton, D. G. (1995). Intimate abusivenes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2(3), 207 - 224.
- Dutton, L. B., & Winstead, B. A. (2006). Predicting unwanted pursuit: Attachm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relationship alternatives, and break-up distres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4), 565-586.
- Dye, M. L., & Davis, K. E. (2003). Stalking and psychological abuse: Common factors and relationship-specific characteristics. *Violence and Victims*, 18(2), 163 - 180.
- Easteal, P. (1996). Shattered dreams: Marital violence against overseas-born

- women in Australia. Australian Govt. Pub. Service.
- Farnham, F. R., James, D. V., & Cantrell, P. (2000). Association between violence, psychosis, and relationship to victim in stalkers. *The Lancet*, 355(9199), 199.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 - 291.
- Feeney, J. A., & Noller, P. (1992). Attachment style and romantic love: Relationship dissolut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4(2), 69 - 74.
- Ferreira, C., & Matos, M. (2013). Post-relationship stalking: The experience of victims with and without history of partner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8(4), 393 - 402.
- Fisher, B. S., Cullen, F. T., & Turner, M. G. (2002). Being pursued: Stalking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tudy of college women. *Criminology & Public Policy*, 1(2), 257-308.
- Gamache, D., Cloutier, M. È., Faucher, J., Leclerc, P., & Savard, C. (2023). Stalking perpetration through the lens of the alternative DSM-5 model for personality disorders.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17(2), 135-146.
- Geberth, V. J. (1992). Stalkers. *Law and order*, 10, 1-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 - 524.
- Kamphuis, J. H., & Emmelkamp, P. M. G. (2000). Stalking - a contemporary challenge for forensic and clinical psychiatr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6(3), 206-209.
- Kienlen, K. K. (1998). Developmental and social antecedents of stalking. In *The psychology of stalking* (pp. 51-67). Academic Press.
- Kienlen, K. K., Birmingham, D. L., Solberg, K. B., O'Regan, J. T., & Meloy, J. R. (1997). A comparative study of psychotic and nonpsychotic stalk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5(3), 317 - 334.

- Krueger, R. F., Derringer, J., Markon, K. E., Watson, D., & Skodol, A. E. (2012). Initial construction of a maladaptive personality trait model and inventory for DSM-5. *Psychological medicine*, 42(9), 1879–1890.
- Lacey, K. K., McPherson, M. D., Samuel, P. S., Powell Sears, K., & Head, D. (2013).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women in different ethnic grou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2), 359–385.
- Langhinrichsen-Rohling, J., & Rohling, M. (2000). Negative family-of-origin experiences: Are they associated with perpetrating unwanted pursuit behaviors? *Violence and Victims*, 15(4), 459 - 471.
- Levy, K. N., Meehan, K. B., Weber, M., Reynoso, J., & Clarkin, J. F. (2005).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Psychopathology*, 38(2), 64–74.
- Levy, M. B., & Davis, K. E. (1988). Love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4), 439–471.
- Logan, T. K., & Walker, R. (2009). Partner stalking: Psychological dominance or “business as usual”? *Trauma, Violence, & Abuse*, 10(3), 247 - 270.
- Logan, T. K., Shannon, L., & Cole, J. (2007). Stalking victimization in the contex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22(6), 669–683.
- MacKenzie, R. D., Mullen, P. E., Ogloff, J. R. P., McEwan, T. E., & James, D. V. (2008). Parental bonding and adult attachment styles in different types of stalker.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3(6), 1443 - 1449.
- Markon, K. E., Quilty, L. C., Bagby, R. M., & Krueger, R. F. (2013).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an informant report form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Assessment*, 20, 370–383.
- McAnaney, K. G., Curliss, L. A., & Abeyta-Price, C. E. (1999). From Imprudence to Crime: Anti-Stalking Laws. *Notre Dame Law Review*, 68(4), 819–909.
- McCann, J. T. (1998). Subtypes of stalking (obsessional following) in

-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1(6), 667-675.
- McEwan, T. E., Daffern, M., MacKenzie, R. D., & Ogloff, J. R. (2017). Risk factors for stalking violence, persistence, and recurrence.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8(1), 38-56.
- Mechanic, M. B., Weaver, T. L., & Resick, P. A. (2000).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talking behavior: Exploration of patterns and correlates in a sample of acutely batter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5(1), 55-72.
- Meloy, J. R. (1992). *Violent attachments*. 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 Meloy, J. R. (1996). Stalking (obsessional following): A review of some preliminary stud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147-162.
- Meloy, J. R. (1997). The clinical risk management of stalking: "Someone is watching over m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51(2), 174-184.
- Meloy, J. R. (1998). The psychology of stalking. In *The psychology of stalking* (pp. 1-23). Academic Press.
- Meloy, J. R. (1999). Stalking: An old behavior, a new crim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2(1), 85-99.
- Meloy, J. R. (2007). Stalking: The state of the science [Editorial].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17(1), 1 - 7.
- Meloy, J. R., & Boyd, C. (2003). Female stalkers and their victim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31(2), 211-219.
- Meloy, J. R., & Gothard, S. (1995). Demographic and clinical comparison of obsessional followers and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2), 258 - 263.
- Meloy, J. R., Davis, B., & Lovette, J. (2001). Risk factors for violence among stalkers. *Journal of Threat Assessment*, 1(1), 3-16.
- Melton, H. C. (2007). Predicting the occurrence of stalking in relationships characterized by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1), 3-2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The Guilford Press.

- Miller, L. (2012). Stalking: Patterns, motiv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6), 495–506.
- Mullen, P. E., Mackenzie, R., Ogloff, J. R., Pathé, M., McEwan, T., & Purcell, R. (2006).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s in the stalking situ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Online*, 34(4), 439–450.
- Mullen, P. E., Pathé, M., & Purcell, R. (2001). Stalking: New constructions of human behaviour.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5(1), 9–16.
- Mullen, P. E., Pathé, M., & Purcell, R. (2009). *Stalkers and their victim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llen, P. E., Purcell, R., & Stuart, G. W. (1999). Study of stalk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8), 1244–1249.
- Nicastro, A. M., Cousins, A. V., & Spitzberg, B. H. (2000). The tactical face of stalking.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1), 69–82.
- Norris, S. M., Huss, M. T., & Palarea, R. E. (2011). A pattern of violence: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talking. *Violence and victims*, 26(1), 103–115.
- Rosenfeld, B. (2003). Recidivism in stalking and obsessional harassment. *Law and Human Behavior*, 27(3), 251 - 265.
- Rosenfeld, B., & Harmon, R. (2002). Factors associated with violence in stalking and obsessional harassment cas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6), 671–691.
- Rosenfeld, B., Galietta, M., Foellmi, M., Coupland, S., Turner, Z., Stern, S., & Ivanoff, A. (2019).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 for the treatment of stalking offenders: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43(4), 319.
- Saunders, D. G. (1992). A typology of men who batter: Three types derived from cluster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2), 264 - 275.
- Senkans, S., McEwan, T. E., & Ogloff, J. R. (2021). Assessing the link

-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ost relationship stalking: A gender-inclusive stud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1-2), NP772-NP802.
- Shaver, P. R., & Hazan, C. (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4), 473-501.
- Sheridan, L. P., Blaauw, E., & Davies, G. M. (2003). Stalking: Knowns and unknowns. *Trauma, Violence, & Abuse*, 4(2), 148-162.
- Sheridan, L., & Davies, G. M. (2001). Stalking: The elusive crime.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6(2), 133-147.
- Sperling, M. B., & Berman, W. H. (1991). An attachment classification of desperate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1), 45-55.
- Spitzberg, B. H., & Veksler, A. E. (2007). The personality of pursuit: Personality attributions of unwanted pursuers and stalkers. *Violence and Victims*, 22(3), 275-289.
- Spitzberg, B. H., Cupach, W. R., & Ciceraro, L. D. (2010). Sex differences in stalking and obsessive relational intrusion: Two meta-analyses. *Partner Abuse*, 1(3), 259-285.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U. E.,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Violent 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risk marker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12), 1034-1048.
- Thomas, S. D., Purcell, R., Pathe, M., & Mullen, P. E. (2008). Harm associated with stalking victimiza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2(9), 800-806.
- Tjaden, P., & Thoennes, N. (2000). The role of stalking in domestic violence crime reports generated by the Colorado Springs Police Department. *Violence and Victims*, 15(4), 427-441.
- Tonin, E. (2004). The attachment styles of stalkers.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15(4), 584-590.

- Tweed, R. G., & Dutton, D. G. (1998). A comparison of impulsive and instrumental subgroups of batterers. *Violence and victims*, 13(3), 217-230.
- Twenge, J. M., & Campbell, W. K. (2003). "Isn't it fun to get the respect that we're going to deserve?" Narcissism, social rejection,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2), 261-272.
- Westen, D., & Heim, A. K. (2003). Disturbances of self and identity in personality disorders. In M. R. Leary &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643 - 664). The Guilford Press.
- Wheatley, R., Winder, B., & Kuss, D. J. (2020). What are the features of psychopathology for men who commit stalking offences?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55, 101461.
- Wheeler, M. L. (2002). Effect of attachment and threat of abandonment on intimacy anger, aggressive behavior, and attributional style. Syracuse University.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The world health report 2002: reducing risks, promoting healthy lif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Good health adds life to years: Global brief for World Health Day 2012.
- Zona, M. A., Palarea, R. E., & Lane Jr, J. C. (1998). Psychiatric diagnosis and the offender-victim typology of stalking. In *The psychology of stalking* (pp. 69-84). Academic Press.
- Zona, M. A., Sharma, K. K., & Lane, J. (1993). A comparative study of erotomanic and obsessional subjects in a forensic sampl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38(4), 894 - 903.



##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 안내사항

부록 2. 인구통계학적 설문

부록 3. 데이트 폭력 피해 척도

부록 4. 집착 행동 척도

부록 5. 통제 행동 척도

부록 6. 스토킹 피해 척도

부록 7. 정보제공자 보고형 성격특성 척도

## 부록 1. 연구 참여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임상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소민입니다.

본 연구 설문지는 만 19세 이후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관계 종결 후 스토킹 피해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을 통해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는 석사학위논문 작성 및 스토킹 피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체 문항 응답에는 약 15분 가량 소요되며 제시되는 모든 문항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연인과 교제 중 귀하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정도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은 한 사람과 관계에서 경험한 폭력 피해 및 스토킹 피해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문항을 잘 읽어 보시고 동일한 인물과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 및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해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귀하의 응답은 소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되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설문 결과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종료 3년 경과 이후 일괄 폐기됩니다.

설문 실시 중 과거 피해 경험 상기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시는 경우 즉시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입력하신 자료는 제출 완료 전까지 저장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 및 연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구자 메일을 통해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참여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프트콘(2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을 증정하오니,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주세요(연구 종료 이후에 발송 예정).

연구자 : 박소민 (Bagsomin43@gmail.com)

지도교수 : 정승아 교수님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선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062)230-7640

## 부록 2. 인구통계학적 설문

###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대한 동의

귀하는 위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본 설문의 응답 내용에 대한 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실 시 참여가 불가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사항입니다. 연구에 꼭 필요한 자료이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해당 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1. 귀하의 성별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남                      ② 여

#### 2. 귀하의 연령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만 19세 미만 ②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③ 만 30세 이상~39세 이하 ④ 만 40세 이상~49세 이하

#### 3. 귀하의 최종학력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전문대/4년제)  
⑤ 대학원 졸업 ⑥ 기타

#### 4. 귀하의 직종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직 종사자 ④ 서비스직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직 종사자 ⑩ 군인 ⑪ 학생 (대학교 혹은 대학원) ⑫ 기타

#### 5.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시 또는 ( )군

#### 6. 연구 참여 후 소정의 보상을 받으실 개인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선택)

### 부록 3. 데이트 폭력 피해 척도

다음은 이성 교제 중 갈등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만 19세 이후 교제한 연인 중 갈등이 많아 자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렬한 연인관계를 떠올리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행동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순번	문항 내용	없음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나에게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짜증난 목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에게 고통을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게 침묵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 일부러 술을 먹고 와서 주정을 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약점을 잡아 모욕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에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를 밀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를 발로 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나를 때린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계속해서 심하게 나를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성행동을 하기 위해 말로 위협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성행동을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성행동을 하기 위해 나를 때리거나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협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귀하가 이러한 경험을 했을 당시 연령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만 19세 미만 ②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③ 만 30세 이상~39세 이하 ④ 만 40세 이상~49세 이하 ⑤ 만 50세 이상~59세 이하 ⑥ 만 60세 이상

■ 귀하가 상대방과 교제한 기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예, 12개월)

## 부록 4. 집착 행동 척도

다음의 문항들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동과 생각 또는 느낌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앞서 떠올린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렬한 연인과 관계에서 귀하가 경험한 것과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하십시오.

**\*앞서 떠올린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렬한 연인과 교제 당시 경험했던 내용에 체크하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홈페이지, 이메일에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여성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화를 냈다.	①	②	③	④	⑤
5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자 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매시간 문자를 주고받아야 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초조해 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과거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와 안 좋았던 일들을 자꾸 상상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를 생각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문자와 전화로 수시로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여성과 만나는지 감시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파트너만을 생각해주길 바랬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파트너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초라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15	모든 것을 나와 관련지어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이성과 연락하거나 말하는 것만 봐도 질투를 했다.	①	②	③	④	⑤
17	계속 보고 싶다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이성을 만나면 질투했다.	①	②	③	④	⑤
19	사소한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불안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만나는 다른 이성친구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다.	①	②	③	④	⑤
21	파트너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나도 파트너를 생각해주길 바랬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해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하루일과를 세세히 알아야했다.	①	②	③	④	⑤
24	파트너의 일을 소홀히 하고 나를 따라다녔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행동을 간섭하고 통제했다.	①	②	③	④	⑤
26	파트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 생각 때문에 파트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28	파트너는 내가 파트너를 더 사랑해주길 바랬다.	①	②	③	④	⑤
29	파트너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주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을 수시로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가 만나기 어렵다고해도 만나기를 요구했다.	①	②	③	④	⑤

32	매일 만나려고 했다.	①	②	③	④	⑤
33	파트너와 있을 때 나에게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불쾌해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떠날까봐 불안해 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가 다른 이성을 친절하게 대하면 불쾌해했다.	①	②	③	④	⑤
36	애정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 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파트너의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와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했다.	①	②	③	④	⑤



## 부록 5. 통제 행동 척도

다음은 연인관계에서의 행동 제한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들을 잘 읽어 보시고 앞서 떠올린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렬한 연인과 관계에서 귀하가 경험한 것과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하십시오.

(\*앞서 떠올린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렬한 연인과 교제 당시 경험했던 내용에 체크해주십시오)

순번	문항 내용	없음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1주일에 1회 이상	거의 매일
1	핸드폰, 이메일,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자주 점검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옷차림을 제한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써클이나 모임 활동을 못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했다.	①	②	③	④	⑤
5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했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 의심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파트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싫어해도 하도록 만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하는 일이 파트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만두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부록 6. 스토킹 피해 척도

다음의 문항들은 스토킹 피해의 유형들입니다. 앞서 떠올린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렬한 연인관계의 당사자와 헤어진 이후 경험했던 스토킹 피해에 체크해 주십시오.

\*앞서 떠올린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렬한 연인이 헤어짐을 거부했더라도, 귀하께서 헤어짐에 대해 분명히 언급한 시점 이후 경험했던 내용에 체크해 주십시오.

순번	문항 내용	있음	없음
1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했다.		
2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또는 그 지역에 와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서 있었다.		
3	전화·편지·SNS 등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문자 등을 보냈다.		
4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특정 물건·그림·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었다.		
5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했다.		
6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하였다.		
7	인터넷, 공공장소 또는 구두를 통해 나에게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를 했다.		
8	집 또는 차 등 나의 개인적인 공간에 몰래 숨어들어 겹주거나 가해자가 그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다.		
9	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나인 척 행세를 하고 다녔다(SNS 계정 생성 등).		

10	나와 사귀는 것처럼 혹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녔다.		
----	--------------------------------------	--	--

■ 귀하가 이러한 피해를 경험했을 당시 연령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만 19세 미만 ②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③ 만 30세 이상~39세 이하 ④ 만 40세 이상~49세 이하

■ 귀하가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것은 언제입니까?

- ① 관계 종결 이후 1개월 이내 ② 관계 종결 이후 1~3개월 뒤 ③ 관계 종결 이후 3~6개월 뒤 ④ 관계 종결 이후 6~12개월 뒤 ⑤ 관계 종결 이후 1년 뒤 ⑥ 피해 경험 없음

■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개월 이내 ② 1~3개월 사이 ③ 3~6개월 사이 ④ 6~12개월 사이 ⑤ 1년 이상 ⑥ 피해 경험 없음

■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된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한 달에 1번 ② 2주에 1번 ③ 일주일에 1번 ④ 일주일에 2~3번 ⑤ 거의 매일 ⑥ 피해 경험 없음

■ 상대방과는 다음 중 어떤 관계에 해당했습니까?

- ① 전 연인(동거 경험 있음) ② 전 연인(동거 경험 없음) ③ 배우자(별거) ④ 전 배우자 ⑤ 피해 경험 없음

## 부록 7. 정보제공자 보고형 성격특성 척도

본 설문지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잘 알고 지낸 상대방에 대해 설명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신 후 설문지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앞서 떠올린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렬한 연인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반응에 ‘전혀 아니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적절하게 체크해주시시오. 모든 문항은 체크하는 본인이 아닌 앞서 떠올린 가장 기억에 남고 강렬한 연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므로 주의 깊게 생각해보시고 체크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매우 아 니 다	아 니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변한다.	①	②	③	④
2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감정 반응이 훨씬 더 격렬하다.	①	②	③	④
3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4	별 것 아닌 일로도 쉽게 감정적으로 된다.	①	②	③	④
5	감정이 순간순간 쉽게 바뀐다.	①	②	③	④
6	사소한 일로도 쉽게 감정적으로 된다.	①	②	③	④
7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일 수 있도록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9	사람들의 찬사를 듣기 위한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1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2	대담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13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4	관심 받기를 갈망한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16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얘기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7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꾸며서 둘러댈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18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할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19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교활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20	앞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거나 일을 부풀려 과장한다.	①	②	③	④
21	남보다 앞서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속임수를 쓰는 것쯤 주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2	어렵더라도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3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24	거짓말을 쉽게 한다.	①	②	③	④
25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진실을 숨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26	육체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27	무례하고 불친절하다.	①	②	③	④
28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9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을 보더라도 그다지 괴로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0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1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32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33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①	②	③	④
34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별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①	②	③	④
35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6	사람들에게 때때로 폭력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7	아랫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는 일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38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9	대체로 친절한 편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40	무책임하다.	①	②	③	④
41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매우 부주의하게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42	지킬 생각도 없으면서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①	②	③	④
43	청구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44	책임질 상황을 피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45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약속이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6	자신이 맡은 일은 철저히 완수한다.*	①	②	③	④
47	무모하다.	①	②	③	④
48	위험한 상황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49	위험한 스포츠와 활동은 피한다.*	①	②	③	④
50	위험한 활동을 할 때도 절제를 잘 못하고 한계를 넘고 만다.	①	②	③	④
51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52	위험에 처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53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더라도 멈추질 못한다.	①	②	③	④

54	조금이라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피한다.*	①	②	③	④
55	허황되게 행운을 기대하기 보다는 안전한 쪽을 더 선호한다.*	①	②	③	④
56	간혹 있는 약간의 위험은 개의치 않는다.	①	②	③	④
57	위험할 가능성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	①	②	③	④
58	위험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9	위험한 일을 할 때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0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61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짜증나게 하면 바로 쏘아붙인다.	①	②	③	④
62	야비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3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64	윗사람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분개한다.	①	②	③	④
65	성질이 매우 급하다.	①	②	③	④
66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수한다.	①	②	③	④
67	별 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68	항상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69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모욕을 당하면 무척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70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71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하는데 능숙하다.	①	②	③	④
72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73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능숙하다.	①	②	③	④
74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5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쯤은 어려워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6	전적으로 충동적이다.	①	②	③	④
77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8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79	항상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80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1	매우 충동적이다.	①	②	③	④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한 구조, 보호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

기관명	상담 및 지원 내용
여성긴급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상담 (국번없이) 1366 또는 특정 지역 1366센터 상담 요청 시 (지역 번호) 1366</li> <li>· 사이버 상담(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www.women1366.kr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women1366</li> </ul>
해바라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상담 서울해바라기센터(서울대병원): 02-3672-0365 광주해바라기센터(조선대병원): 062-225-3117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순천성가톨릭로병원): 061-727-0117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원광대병원): 063-859-1375</li> <li>· 사이버 상담(게시판 상담 및 비공개 상담) 서울해바라기센터: www.help0365.or.kr 광주해바라기센터: www.gjonestop.or.kr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www.jnonestop.or.kr</li> </ul>
스토킹 112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조치: 스톱킹 행위 제지 및 스톱킹 행위 중단 통보, 행위의 지속·반복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li> <li>· 긴급응급조치: 경찰의 직권에 따른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li> <li>· 잠정조치: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최대 2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li> </ul>